

## ●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2-064호

「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」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8월 30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### 「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3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과 지원대상 사업자별 결합판매 지원 규모를 정하고, 법제처의 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('21.12.30.) 등에 따라 규제 재검토 조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[별표1] 산정

○ 직전 회계연도 5년간(2017년~2021년)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 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

나.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[별표2] 산정

○ 직전 회계연도 5년간(2017년~2021년) 지역·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 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

다. 규제 재검토 조항 분리(안 제11조 개정 및 제12조 신설)

○ 법제처의 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('21.12.30.) 등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규제의 재검토 및 재검토기한으로 분리

#### 3. 의견제출

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(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, 정부과천청사 2동 전화 : 02) 2110-1272, 팩스 : 02) 2110-0146, 이메일 : gdsong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4. 기타

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 정책정보센터/법령정보/입법예고)란에 게시된 「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(02-2110-127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